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AI: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감독 영역인가?」 외 4분기 동향

리더 메시지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1월 Brief』는
딜로이트 글로벌 보고서 『**AI: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감독 영역인가?**』를 소개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기준 제정 및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안내**』 등의 주요 보도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센터에 접수된 질의응답(FAQ) 사안인
『**이사회 결의시 기권한 이사의 책임**』 등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소개 영상도**』 담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Brief 를 통해 4분기 동향을 파악하고,
이사회·감사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AI: 감사위원회의 새로운 감독 영역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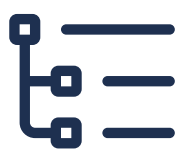
감사위원회는 거버넌스와 이해관계자 신뢰 관련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제시하는 과제와 기회를 이해해야

서베이 결과

- AI 감독 규정·절차의 개발과 실행을 고려하는 경우(36%)에 비해 공식화된 감독 프레임워크를 갖추었다고 답한 경우(13%)는 적음
- 비즈니스 리더의 대다수(94%)는 AI가 기업 성공에 중요하다고 답한 '22년 결과와 비교시 경영진과 이사회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음을 시사

AI 거버넌스 퍼즐

- AI는 유동적인 상태로 해석되며 현재 AI 환경은 추상적인 거버넌스 퍼즐로 표현됨



이사회·위원회
AI 감독 미할당

29%



이사회 AI
안전 부재

44%



AI 리스크 완화 방안
의견·지식 부족

68%

AI 전략과 거버넌스에 관한 고려사항

- 1 회사가 활용 가능한 AI 사례는 무엇이며, 이는 감사위원회 감독영역에 영향을 주는가?
- 2 경영진은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강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AI 활용 기회를 고려했는가?
- 3 감사위원회의 다른 주요 감독 영역(사이버보안, 데이터 관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존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가 사용되거나 사용될 예정인가?
- 4 AI 사용 프로세스가 리스크 사전대응 수준 및 완화전략 측면에서 회사의 리스크 선호도와 일치하는가?
- 5 AI 기술의 개발속도 고려시, 기존 프로세스가 적절한 빈도로 평가·업데이트 되는가?

개정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23.12.29. 시행

감사인·기업 간 협의가 내실화 되어 감사계약이
보다 합리적으로 체결될 것으로 기대

주요내용

1. 감사인 기업간 감사시간 등 합의과정 내실화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게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 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기업과의 협의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23.12.29. 이후 체결분부터 적용)

감사계약 체결보고서 개선 내용

현행

감사보수
(연결 포함)

개선

감사보수 (연결포함)

- 예상 감사 투입시간
-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 표준감사시간
- 전기 감사 투입시간

+

· 감사인
선임주체와
협정한 내용

2.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제고

상장사 희망시 **산업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 위한 **절차·기준 마련**

적용산업

- ✓ 건설, 금융 등 11개 산업
- ✓ '24년 건설, 금융, '25년 나머지 산업으로 순차 시행

지정절차

- ✓ 해당 상장사는 지정기초자료 신고서에 산업전문성 필요여부 적시

산업전문성 기준

- ✓ 감사팀에 산업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 필요 업무에 배정하여 감사절차에 참여, 감사조서에 산업전문가임을 기재·서명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성 강화· 연결내부회계 대상범위 판단기준 명확화

경영진 책임의식 제고로 내실있는 제도 운영 기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규정화
- 대표이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시 따라야 할 기준 등을 업무절차별로 제시하여 향후 회사의 평가·보고, 외부감사 및 감리시 준거 기준으로 활용

재무보고위험
식별

통제 식별

통제 효과성
평가

평가결과
문서화

🔍 보고서 신설·추가 사항

운영실태보고서:

대표이사 ▶ 주총·이사회·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내역, 횡령 등 자금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핵심 내부통제 활동 등 추가

평가보고서:

감사(위원회) ▶ 이사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내역,
자금관련 부정 위험에 대한
감사인과의 소통내역 등 추가

- '24.1.1 시행 (1년간 기존 모범규준 적용 유예기간 부여)

연결내부회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절차를 3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양적·질적 판단기준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 적용의 어려움 해소



대상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산정할 수 있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도 완화

사외이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증선위는 상장사 사외이사가 기업 내부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적발하여 검찰 통보

사건 개요



조사결과

1. 사외이사의 사익추구

- 이사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회사 준법경영을 지원해야 할 사외이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사익 추구

2. 직무상 지위 남용

- 이사회 일원으로 주요의사결정에 관여
- 이해상충 방지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득정보를 적극 이용

유의사항

- 사외이사가 직무관련 지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

- 상장사는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의 불공정거래 예방 위해 자사주 매매관련 준수사항 안내·교육 제공 필요

➔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관리·감독 의무 이행 필요

이사회 결의시 기권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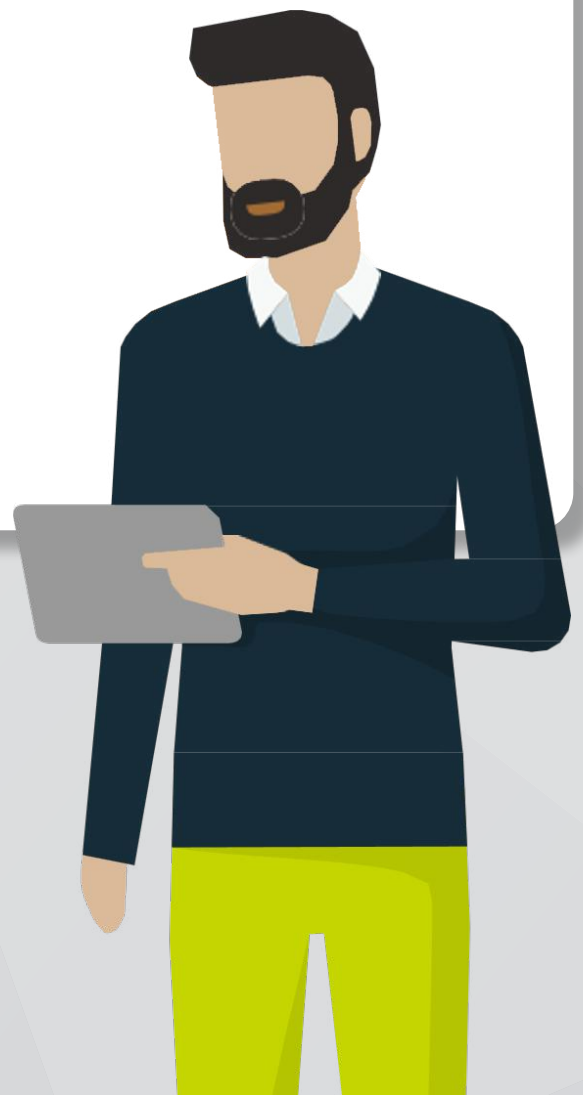
Q. 최근 이사회 결의로 실행된 사업에 막중한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사회 결의시 기권한 이사의 경우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까?

상법 제399조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이사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 찬성하지 않았을 시 이를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가 이사회 결의시 기권하였으나 이사회 의사록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회사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서 안건에 대해 기권한 것은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이사의 임무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것만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반대 또는 기권하지 않은 경우,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2호 발간

이사회·감사위원회를 아우르는 기업지배기구 현황과 시사점을 담은 종합 조사 보고서 발간 (‘23.12.27)



보고서 다운로드



카드뉴스 다운로드



KOSPI 200 기업 감사위원회 주요 현황

- 1 감사위원회 설치
- 2 감사위원회 구성
- 3 감사위원회 독립성
- 4 감사위원회 재직기간·연령·성비
- 5 감사위원회 안건·찬성률
- 6 감사위원회 회의
- 7 감사위원 전문성
- 8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 9 내부감사부서
- 10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11 감사위원회 교육
- 12 감사위원 보수
- 13 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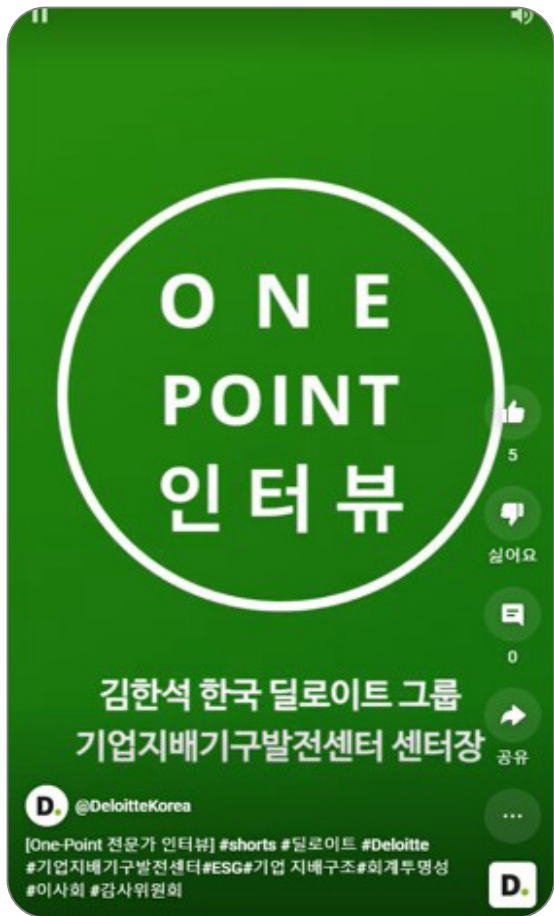


2023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 1 '24년도 재무제표 증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 2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 가이드라인 개선
-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4 기업환경 개선 및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5 배당절차 개선 방안 마련
- 6 '24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One Point 인터뷰

김한석 센터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를 소개하며 향후 이사회·감사위원회 직무수행에 유익한 영상을 제공할 것



센터소개 영상(클릭)



센터 발간물 구독(클릭)

센터의 주요소식 (발간물, 세미나 등)을 받아보세요!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2014년 회계업계에서 선도적으로 설립되어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



- 기업지배기구 Insights,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뉴스레터/Brief, 이사회·감사위원회 실무 가이드, 글로벌 자료 번역본 등 제공
- 주요 발간물의 이해를 돕는 카드뉴스 제공
- 향후 관련 영상 제공 예정



- 사외이사, 감사(위원), C레벨 등을 대상으로 연중 화두가 되는 주요 아젠다를 선별하여 대면 세미나와 웨비나 연 1회씩 제공



- 고객 요청시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세미나 제공
- 📧 신청하기 | krccg@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파트너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정 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자문교수단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Partner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hansukim@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